

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9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3. 6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 안 이 유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('97. 1. 1시행)됨에 따라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 위원회 위원장, 간사의 직명을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것임.

주 요 골 자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·시행에 따른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 도지편찬위원회 위원장, 간사의 직명 변경
(제2조 제2항, 제10조 제2항)
- 위원장 부지사 ⇨ 행정부지사
- 간사 문화예술과장 ⇨ 문화체육과장

근 거 법 령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및 제11조

기 타 참 고 자 료

- 현행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(전문)

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 제2항중 “부지사” 를 “행정부지사”로,

제10조 제2항중 “문화예술과장” 을 “문화체육과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